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 및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외에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미회수자료 제공 대상 및 제공 제외(안 제11조2, 제11조의3 신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미회수자료의 제공’ 신설에 따른 자료의 제공기준을 규정(안 제11조의2)

또한, 해당 사업주의 사망 등으로 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기준을 규정(안 제11조의3)

나. 권한의 위임·위탁 개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위탁사무 추가 및 한

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내용 신설(안 제24조제2항, 제4항)

1)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미회수자료의 신용정보제공’ 신설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규정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

2)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할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 사무와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나’호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탁 사무처리 현황을 제출하도록 보고 사항 추가(안 제25조, 제25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30. ~ 2024. 6. 10. 예정)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미회수자료의 제공 대상)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의3(미회수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해당 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미회수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해당 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사업주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미회수자료 제공일 전까지 법 제8조에 따른 대위권을 통해 회수하는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전액 납부한 경우
3. 해당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해당 사업주가 변제금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다만, 연기 기간은 당초의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5. 해당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변제금 분할 납부를 승인받아 이를 이행하는 경우
6. 해당 사업주가 미회수자료 제공일 전까지 변제금의 50% 이상을 납부하고 남은 변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변제금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회수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자료의 제공
13. 제2호의 사무 가운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액 회수업무의 재위탁. 단,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자산

관리공산 설립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재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1억원 미만인 사업주에 대한 체납액 회수업무

나. 대지급금 최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주에 대한 체납액 회수업무

14. 제13호와 관련된 체납자에게 재위탁 사실의 통지

15. 제13호에 따른 회수 현황 관리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는 제24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재위탁한 사무에 한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제2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체납액 회수업무에 한한다)

2.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제2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체납액 회수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검사·질문(제2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체납액 회수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채권의 체납 관리

제25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자료의 제공 현황

5. 제24조제2항제13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위탁한 사무의

채권관리 내용(회수 현황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보고)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위탁받은 채납액 회수업무에 대한 채권관리 사무 현황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회수자료의 제공 대상 등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미회수자료의 제공 대상)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u> <u>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u>
<u><신 설></u>	<u>제11조의3(미회수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해당 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미회수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해당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해당 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u>

2. 해당 사업주가 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미회수자료 제공일 전까지 법 제8조에 따른 대위권을 통해 회수하는 금액 (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전액 납부한 경우
3. 해당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해당 사업주가 변제금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다만, 연기 기간은 당초의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5. 해당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변제금 분할 납부를 승인받아 이를 이행하는 경우
6. 해당 사업주가 미회수자료 제공일 전까지 변제금의 50% 이상을 납부하고 남은 변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
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
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 11. (생략)

<신설>

<신설>

소명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변
제금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근로복지공단
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회수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근로복지공단-----

-----.

1.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
수자료의 제공

13. 제2호의 사무 가운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채납
액 회수업무의 재위탁. 단, 사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신 설>

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재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
계가 1억원 미만인 사업주
에 대한 체납액 회수업무
나. 대지급금 최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주에 대한 체납액 회
수업무

14. 제13호와 관련된 체납자에
게 재위탁 사실의 통지

15. 제13호에 따른 회수 현황 관
리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는 제24
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근로복
지공단이 재위탁한 사무에 한하
다.

1. 법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의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제24조제2항제13
호에 따른 체납액 회수업무에
한한다)

제25조(공단의 보고)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2.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
(제2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채납액 회수업무 처리에 필요
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검사·
질문(제24조제2항제13호에 따
른 채납액 회수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채권의 채납 관리

제25조(공단의 보고)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
자료의 제공 현황

5. 제24조제2항제13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위탁한
사무의 채권관리 내용(회수
현황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의2(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보고)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

<u>제25조의2</u> (생략)	<u>공단으로부터 재위탁받은 체납액 회수업무에 대한 채권관리사무 현황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해야 한다.</u> <u>제25조의3</u> (현행 제25조의2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 락 처	(044) 202 - 7563